요약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**2단계 연장**(4.12 ~ 5.2)

1. 개요

- 【적용기간】 '21. 4. 12.(월) 0시 ~ '21. 5. 2.(일) 24시 (3주간 적용)
 - 확산기로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용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되, 상황 악화 시에는 즉시 방역조치·단계 조정
- □ (단계) 2단계를 유지하되, 위험신 시설·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

2. 주요 조치사항

□ 주요 방역 조치

- (사적 모임)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
 - * 동거·직계 가족, 상견례,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
- (유흥시설^{*}) 방역수칙 미이행,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 하여 집합금지 적용
 - * 유흥주점업(룸살롱, 클럽, 나이트 등), 단란주점, 헌팅포차·감성주점, 콜라텍(무도장 포함), 홀덤펍 (수도권 약 1.5만 개소, 비수도권 약 2.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)
- **(운영시간) 운영제한 시간 22시 유지**(다만, 상황 악화 시 21시로 변경 즉시 추진)
 - *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음식점·카페, 파티룸, 실내스탠딩 공연장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(노래연습장 관리 강화) 주류 판매, 도우미 고용·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(경찰청, 지자체)
 - *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(주류)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, 2차 영업정지 1월, 제4호(접대부)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,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
 -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
- (목욕장업)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,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
- (백화점 등 방역 강화) 백화점·대형마트(3,000㎡이상)에 시식·시음· 견본품 사용 금지,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 등) 이용 금지 등 의무화

□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화

○ (기본방역수칙)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 하도록 적극 홍보 및 점검 등 강화

기본방역수칙

①마스크 착용 의무, ②출입자명부 관리, ③주기적 소독 및 환기, ④음식 섭취 금지, ⑤증상확인 및 출입제한, ⑥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⑦방역수칙·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

<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 예시 >

다중이용시설	소관 부처	다중이용시설	소관 부처
식당·카페, 유흥시설 등	식약처	백화점·대형마트, 종합소매업 등	산업부
실내체육시설, 영화관·공연장, PC방, 노래연습장, 카지노, 도서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호텔 등 숙박시설, 오락실·멀티방, 무도장, 종교시설 등	문체부	학원(일반, 관악기·노래·연기·댄스·무용, 기숙형), 독서실 등	교육부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공정위	목욕 장업, 이미용업, 장례식장 등	복지부
결혼식장	여가부	사업장·기업, 직업훈련기관 등	고용부
전통시장, 중소슈퍼 등	중기부	서비야기비, 국비군단기단 중	- 上の十

- (처벌강화)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, 집합금지 등 **엄격 적용**
 - 「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 처분 권고지침」 ('21.4.2, 중대본 보고) 활용하여 **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 실시**
- (지역·업종별 제한)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은 22시 운영제한,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 적극 추진
- (홍보) 각 기관, 관련 협회·단체는 기본방역수칙 인쇄, 홍보물 배포 및 출입구에 게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활성화

□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

- (사업장) 각 부처별로 **콜센터, 물류센터, 3밀 제조업·기숙형 공장, 육가공** 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 특별 관리(산업부, 고용부, 국토부, 금융위, 과기부)
 - 고위험 사업장 현황 파악 및 협회·단체 등 협조, 일제 점검 실시
 - *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및 즉시 검사 실시, 유행지역의 사업장 및 집단생활 근로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·표본검사 등 강구
 - 2단계 지역(수도권·부산·대전) 기업·공공기관의 재택근무,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 등 적극 추진
- (교회)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·포교원, 종교형 교육 시설,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(문체부, 지자체)
 - 소모임·식사·숙박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 강화하고,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적극 처분
- **(어린이집)** 보육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(4.1~) 시행 등 방역 관리 강화
 -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시 원아·보육교직원 등원·출근 중단 등 가이드라인 배포
- (학교·학원) 학교 밀집도 준수여부 장학지도(교육부·교육청) 실시 및 학원 현장점검(교육청·지자체), 방역수칙 안내 강화
 - 교육청 단위 취약요인 발굴 및 선제적 대응,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·학원 등원 중지 및 즉시 검사 등으로 추가 감염 예방

3.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

- □ 고발조치(벌금) 및 과태료 부과 :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
- □ 구상권 청구 :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

※ (개편) 단계별 추진경과

- ▲(1단계) 2020. 11. 7. ~ 별도 해제 시
- ▲(1.5단계) 2020. 11. 23. ~ 12. 6. ▲식당·키페 조기시행(11. 21~12. 6) ▲ 1.5단계 격상 제외(강화군 . 옹진군)
- **▲(2단계) 2020. 11. 24. ~ 12. 7.** (2주간)
- ▲(2.5단계) 2020. 12. 8. ~ 12. 28. (3주간)
 - (추가 1) 겨울 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2.5단계 : 12. 11.(금) 0시 ~ 12. 28.(월) 24시
 - (추가 2) 인천시 방역강화 조치: 12. 13.(일) ~ 별도 해제 시
 - (추가 3)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추가 : 12. 19.(토) 0시~ 12. 28.(월) 24시
 - (추가 4) 전국 연말·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: 12. 24.(목) 0시 ~ 1. 3.(일) 24시
- **▲(2.5단계 연장) 2020. 12. 29.** ~ **2021. 2. 14.** (약 6주 간)
- **▲(2단계) 2021. 2. 15.** ~ **2021. 4. 11.** (8주 간)

4.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('21.4.12. ~ 5.2) 방역조치(요약표)

※ 유의사항

- 1) 적서 볼드체(밑줄)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- 2) 아래 표는 요약표이므로 각 유형(시설)별 세부지침 준수

	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단계 + 방역수칙 조정)		
(1) 모임 · 행사			
	사적 모임	▶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*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② 상견례(8인까지) 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,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, ⑦ 돌잔치 전문점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		
	기타 모임·행사	 ▶ 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·돌잔치 등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 ★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▶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제한,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〈인천시 조정〉 ▲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(2020. 11. 23. ~ 별도 해제 시) ▲ 의처시 저역 10의 이상 온인 진하구지(2020. 11. 24. ~ 별도 해제 시) 		
(2	▲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(2020. 11. 24. ~ 별도 해제 시) ② 다중이용시설: 중점・일반관리시설 등			
	공통수칙	▶ 기본방역수칙 적용		
	유흥시설 5종 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	<u>▶ 집합금지</u> * 클럽·나이트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(무도장)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 포차 및 홀덤펍		
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		
	노래연습장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(10분이상, 대장작성) * 기계 환기 시설이 없는 경우, 30분간 환기 ▶ 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4m²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		

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단계 + 방역수칙 조정)		
실내 스탠딩공연장	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		
식당·카페 (무인카페 포함)	 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▶ 식당·카페 모두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♪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▶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		
파티룸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개별 방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m²이상)		
실내체육시설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		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 직업훈련기관	▶ 음식 섭취 금지(물-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①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, ②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★ ①, ②안 중 선택 ★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		
결혼식장	▶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		
장례식장	▶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		
목욕장업	<u>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u> 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	
영화관, 공연장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		
PC방	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		
오락실·멀티방 등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		

	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단계 + 방역수칙 조정)		
	독서실·스터디카페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★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(푸드존 등)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,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		
	유원시설 (놀이공원·워터파크)	▶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		
	키즈카페	▶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*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키즈카페는 유원시설업에 따른 놀이공원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▶ 식당, 카페, 공연장 등의 부대시설 운영 시 해당 방역수칙 적용		
	이·미용업	▶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		
	백화점·대형마트	 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▶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 금지 ▶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, 의자) 이용금지 ▶ 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·소독 		
	마트·상점 (300m² 이상)	▶ 마스크 착용▶ 주기적 환기·소독		
3	③ 기타 다중이용시설			
	숙박시설	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박시설 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및 이용 금지 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및 참여 금지 ▶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		
	전시회장·박람회장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	
	국제회의장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		
	국공립시설 등	▶ 경륜·경마·경정 운영중단 ▶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% 이내로 인원 제한 ▶ 체육시설 및 이외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 ▶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		
	사회복지이용시설	▶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〈인천시 조정〉 -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<u>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</u> 운영기준 설정 ※ 단,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		

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단계 + 방역수칙 조정)		
④ 일상 및 사회경제곡	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	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▶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		
교통시설 이용	 ▶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▶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 ▶ 10% 이내 입장 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		
스포츠 관람			
종교활동			
직장근무	 ▶ 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▶ 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		

5.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

1)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- (적용기간) 2020. 8. 26. 0시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2020. 10. 11. / (시행) 2020. 10. 12. / 과태료(사업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) 2)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- (과태료 처분 시행기간) 2020. 11. 13. 0시 ~ 별도 해제 시 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.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 ※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- (적용기간) 2020. 8. 20. 15시 ~ 별도 해제 시 (계도기간) 2020. 10. 12. / (시행) 2020. 10. 13. / (과태료) 10만원 이하 ※ 이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- (적용기간) 2020. 10. 14. 0시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2020. 11. 12. 24시 / (과태료 시행) 2020. 11. 13. 0시 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 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 3) **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** ※'집회 및 사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- (적용기간) 2020. 11. 24. 0시 ~ 별도 해제 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 현행유지 ※ 인천시 전역 <u>10인</u>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- (적용기간) 2020. 8. 24. 0시 ~ 10. 11. 24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 ※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- (적용기간) 2020. 10. 13. 0시 ~ 2020. 11. 23. 24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 4) (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) <mark>우리 市 방역조치 강화</mark> ①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(2020. 12. 13~ 2021. 3. 18.)(기간만료) ②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폐쇄(2020. 12. 15. ~ 2021. 1. 18.)(기간만료) ③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/2 의무시행(2020. 12. 15. ~ 2021. 1. 18.)(기간만료) ④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(2020. 11. 23. ~ 별도 해제 시) 5) **인천시 5인 이상 시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**(기간만료) — (적용기간) 2020. 12. 23.(쉬 0시 ~ <u>2021. 1. 3.(일 24시</u> / (벌금) 주최자 및 참여자 300만원 이하 - **(적용예외)** 공적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/ 시험(분할된 공간 50인 미만) / 결혼식 및 장례식(2.5단계 적용, 50인 미만) /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(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) 등 ※ 정부방침 : 전국 공통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. 4.~) 6) <mark>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지침 행정조치</mark> ※ 市 노인정책과-21375(2020.12.30.)호 - (적용기간) 2020. 12. 31.(목) ~ 상황 종료 시 / 괴태료(책임자·종시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 ※ **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**(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**행정조치 해제** 2020. 9. 14. 0시 - (과태료) 2020. 9. 3. 0시 ~ 9. 13. 24시 조치해제 ※ **인천도시철도 심이시간대(21시~01시) 30% 감축운행**(기간만료) - (적용기간) 2020. 12. 8. ~ 2021. 2. 16.

6. 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현황

구 분	대 상 시 설
전자출입명부 의무화 (간편 전화체크인 가능)	 ▶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, 무도장, 홀덤펍, 노래연습장, 파티룸, 목욕장업(특별방역조치 종료시까지), 스포츠경기(관람)장, 카지노(외국인카지노 제외), 경륜·경정·경마 ▶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
출입명부 의무화 (전자, 간편전화체크인 <u>또</u> 는 수기명부 선택)	▶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전문점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·외체육시설, 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이·미용업, 미술관·박물관, 종교시설, 도서관, 키즈카페, 마사지업, 안마소, 유통물류센터, 콜센터 ※ 일반관리시설 중 백화점·대형마트·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: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 ▶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, 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 등

참고 1 집합. 모임. 행사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

□ 사적 모임

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-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<u>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</u>을 이유로, <u>5인</u>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<u>동일한</u> 시간대, <u>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</u>에 모여서 진행하는 <u>일시적인</u> 집합·모임활동 금지
-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*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 - *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
- (인원산정) '5명의 범위'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, 등은 제외
- '사적모임'은 영유아^{*}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
 - *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
※ 적용 예외

●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
- 직계가족 또는 **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**이 모이는 경우
 -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.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-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
- ※ 직계가족 모임,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
- **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**이 필요한 경우
- **임종 가능성**이 있어 **가족** 등이 모이는 경우
- 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

② **사적 모임을 제외한, 100인 이상**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

- 이때 집합·모임·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**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**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 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

<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- ▲ (행사) 결혼식, 장례식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- ▲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※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는 별첨 '기본방역수칙'의 해당시설 수칙 적용

-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-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 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
- 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□ 적용대상(참석자 및 관리자·운영자)의 준수사항

< 사적 모임 >

참석자 수칙 관리자·운영자 수칙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▶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아래 사항 모두 준수 * (제외)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. 아동·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 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경우 등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▶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

< 집합·모임·행사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	►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	▶ 마스크 착용 ▶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
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	7 1008 -1C-X CE MC E1
▶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	
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	
▶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

참고 2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적용 대상

○ (대상) 중점관리시설 5종

< 중점관리시설 5종>

- ▲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▲노래연습장 ▲실내 스탠딩공연장
- ▲식당·카페 ▲파티룸

□ 방역수칙

○ 중점관리시설 5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각 시설별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 적용

<추가 적용 수칙>

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
★ 추가 적용 수칙

-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
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m²당 1명)

○(이용자)

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
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m²당 1명)

▲ 노래연습장

★ 추가 적용 수칙

-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
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m²당 1명)
 -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 적용, 4 m'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, 룸별 1명 씩만 이용 안내

○(이용자)

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
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m²당 1명)
- 코인노래연습장 4m²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, 룸별 1명씩만 이용

▲ 실내스탠딩 공연장

★ 추가 적용 수칙

-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
- 좌석 간 최소 1m 간격 유지

○(이용자)

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
- 배치된 좌석(최소 1m 간격)에 착석하여 관람

▲파티룸

★ 추가 적용 수칙

- 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
- 이용인원 제한(개별 방 면적 8m²당 1명)

○(이용자)

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
- 이용인원 제한 준수(개별 방 면적 8m²당 1명)

▲ 식당·카페

★ 추가 적용 수칙

-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

○(이용자)

-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이용

참고 3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적용 대상

- (대상)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*
 - *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 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 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,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. 호텔, 예식장,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

<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>

-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돌잔치전문점 ▲ 목욕장업 ▲ 영화관 ▲ 공연장
- ▲ PC방 ▲ 오락실·멀티방
- ▲실내체육시설 ▲스포츠경기(관람)장 ▲실외체육시설
- ▲학원 등(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(일반), 학원·교습소(관악기·노래·연기), 학원·교습소 (댄스·무용),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숙형))
-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
- ▲ 유원시설(놀이공원, 워터파크) ▲ 이·미용업 ▲ 백화점·대형마트
- ▲ 종합소매업(300m² 이상)

□ 방역수칙

○ **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** 관한 방역수칙은 목욕장업을 제외하고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을 적용

<추가 적용 수칙>

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돌잔치전문점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	
- 개별 돌잔치·결혼식·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	- 개별 돌잔치·결혼식·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	
▲ 영화관, ▲ 공연장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	
-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	-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	
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	한 칸 띄어 앉기	
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		

▲ PC방		
★ 추가 적용 수칙 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	
-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	- 좌석 한 칸 띄어 앉기	
	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	
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^ 오락실 · 멀티방	선국에 있는 영구 세되	
★ 추가 적용 수칙		
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	
- 이용인원 제한	- 이용인원 제한 준수	
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	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m²당 1명	
▲ 실내체육시설	· 시글 여기·선고현덕 6III 당 1당	
★ 추가 적용 수칙	(OLOTI)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	
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	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	
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	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	
4m²당 1명)	4m²당 1명)	
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│ 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	
- 이용인원 제한	- 이용인원 제한 준수	
* 수용가능 관객의 10% 이내 입장'	* 수용가능 관객의 10% 이내 입장	
▲ 실외체육시설 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없	음	
▲ 학원 등(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(일반), 학	원·교습소(관악기·노래·연기), 학원·교습소(댄스	
·무용),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숙형)		
★ 추가 적용 수칙	(OLOTI)	
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	
①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신고면적 8m²당	①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신고면적 8m²당	
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	1명)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	
②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m²당	②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신고면적 4m²당	
1명) 또는 좌석 한 칸 띄어	1명)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,	
	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	
	* ①, ②안 중 선택	
_ * ①, ②안 중 선택		

▲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숙형)

★ 추가 적용 수칙

-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숙박시설 운영 금지
- 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

<학원>

- ① 입소자 (공통) 원칙적 외출금지,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
- (입소前) 2주간 예방격기 권고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
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, 대면수업 금지(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)
-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- 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자가진단앱 체크
-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: 최초 입소 시 2일 이 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
-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: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 원검사결과 제출
- 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.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 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

<직업훈련기관>

- ① 입소자 (공통) 외출 자제, 매일 발열체크,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
- (입소前) 2주간 예방격리 권고, 2일이내 검사한 PCR 또 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
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: 기숙사 밀도 조정 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착 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 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
-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- 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매일 발열체크, 훈련 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
- 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, 방역수칙 준수

- ○(이용자)
- 숙박시설 이용 금지
- 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, 이용 가능

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	
-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	- 좌석 한 칸 띄어 앉기	
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	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	
-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, 22시 이후(익일 05시 까지) 운영 중단	-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, 준수 22시 이후(익일 05시 까지) 이용 금지	
▲ 유원시설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 (이용자)	
-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	-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 준수	
▲ 이·미용업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	
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m²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	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m²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	
▲ 대형마트·백화점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	
- 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	-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 금지	
-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, 의자) 이용하지	-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, 의자) 이용 금지	
않도록 안내 및 조치		
▲ 종합소매업(300m² 이상)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없음		

참고 4 목욕장업 방역지침

□ 목욕장업(수도권)

종사자 수칙

- ▶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점원 등)
 - *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(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)
- ▶ 출입자 명부 관리
- 이용자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
 - * 고령자,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
 - *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히작성 제외 가능
- ▶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* 게시 *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
- ▶'달 목욕(정기이용권)' 신규발급 금지 * 다만,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
- ▶ 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 권고) 및 안내판 게시 * 이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
- ▶ 이용자의 평상 및 공용음료컵 사용금지 * 1인용 의자 비치 가능(최소1m 거리유지)
- ▶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
-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- ▶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
-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, 소독대장작성)
- ▶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
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
- *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
- ▶ 방역관리자 지정
- ▶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
- 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m²당 1명)
 - *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

이용자 수칙

- ▶ 전자출입명부(OR체크인)*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
 - * 고령자,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
 - *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히작성 제외 가능
- ▶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
- ▶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(강력 권고) * 이·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
- ▶ 평상, 공용음료컵 사용금지 * 1인용 의자 사용 가능(최소1m 거리유지)
- ▶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
- ▶ 목욕실,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- ▶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m²당 1명)
- 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
- *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
-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- ▶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

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시설 내 음식(물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*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	
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* 게시 및 안내 *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	
▶ 샤워시설,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	
▶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	

참고 4-1

목욕장업 방역지침 질의응답

1.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이용객에 대한 조치 사항은?

- 스마트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 작성이 어려운 목욕장 이용객에 대해서는
 - 우선, 일반폰으로 가능한 '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*'을 통해 목욕장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,
 - *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화한통으로 출입인증을 하는 출입관리방법으로, 각 기관·시설별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시스템에서 방문등록이 완료
 -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<u>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</u> 후에 수기명부를 추가 비치하여 운영
 - 아울러, <u>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</u>

2.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가 실제 가능한지?

- 일부 지자체는 이미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 중이며,
 - 향후 시행할 지자체는 예방접종, 확진자 발생 등 검사능력을 감안 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해당지역 한국목욕업협회 (지회) 협조 하에 지체없이 실시
 - * 검사는 종사자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점원 등) 및 영업대표자 포함

3.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?

- 공용물품 중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<u>평상, 음료컵은 금지되며,</u> 금지품목 이외 나머지 공용물품은 수시로 표면소독 하에 사용
- 평상 대신에 1인용 의자들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로 배치 가능
- 사적 대화금지는 종사자의 방역준수사항 고지 및 업무사항은 가능하며,

종사자·이용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금지됨을 의미함

- 4. 목욕탕 1시간 이내 사용에 있어 강력권고 조치 범위는?
- 목욕탕의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높아져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며,
 - 이러한 권고문을 목욕탕 입구 등 여러 곳에 게시하여 목욕탕 등의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
 - 5. <u>달목욕(정기이용권)의 범위가 달 이외 판매하는 이용권도 해당</u>되는 것인지?
- 정기이용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규 발급이 금지되며,
 - <u>다만, 정해진 일수(개월단위, 주일단위 등) 안에 반드시 소진되어야</u> 하는 것이 아닌, **횟수권 할인판매는 가능**

참고 5 숙박시설 대상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

□ 적용 대상

- (대상)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(호텔, 모텔, 여관 등)
-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(관광호텔, 호스텔 등)

□ 방역수칙

○ 숙박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**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**과 **아래 '추가 적용 수칙' 적용**

<추가 적용 수칙>

▲숙박시설 전체

★ 추가 적용 수칙

-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 - 행사·파티 등 주최 금지
 - * 바비큐 파티, 클럽 파티,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
 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
- *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
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금지 ○(이용자)
 - 숙박시설 주관 행사 파티 참여금지
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
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이용금지

○(이용자)

- 숙박시설 주관 행사 파티 참여금지
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
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이용금지

참고 6

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적용 대상 : 종교시설

□ 방역수칙

○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**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을 적용**

<추가 적용 수칙>

★ 추가 적용 수칙

-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좌석 수 기준 **20**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**20**% 이 내 참여 가능
- *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
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
-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
- 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 행사(숙박포함)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

○(이용자)

- 좌석 수 기준 **20**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**20**% 이 내 참여 가능
- *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
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
-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
- 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 행사(숙박포함) 참석 및 음식 섭취 금지

참고 7 기타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적용 대상

- (대상)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등 기타시설 8종 < 기타시설 8종>
 - ▲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▲경륜·경마·경정 ▲미술관·박물관 ▲도서관
 - ▲키즈카페 ▲전시회장·박람회장 ▲국제회의장 ▲마사지업소·안마소

□ 방역수칙

○ 기타시설 8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 적용

<추가 적용 수칙>

▲ 카지노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수용가능인원의 20%로 제한	○(이용자) - 수용가능인원의 20% 제한 준수	
▲ 전시회장·박람회장 ▲ 국제회의장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	
▲ 미술관·박물관, ▲ 도서관, ▲ 키즈카페, ▲ 마시지업소·안마소		
★ 추가 적용 수칙		
없음		

참고 8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적용 대상

○ (대상) 콜센터, 물류센터

□ 방역수칙

○ 콜센터, 물류센터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

<추가 적용 수칙>

▲콜센터

- 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
-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 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
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
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
-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
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
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 작성)
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

- ○(이용자)
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▲ 물류센터

-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
-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 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
- ○(이용자)
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
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
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
- -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
-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
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
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
-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

참고 9 대중교통 대상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

□ 적용 대상

- (대상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수단(국제항공편 제외)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「항공안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□ 방역수칙

○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<u>방역</u> 지침을 모두 준수

이용자 수칙

- ▶ 마스크 착용
- ▶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국제항공편 제외